2013년 12월 2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smba.go.kr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2월29일(일) 12:00 이후 보도 가능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보 도 자 료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문의: 공공구매판로과 • 과장 김문환(042-481-4489), • 주무관: 신상규(042-481-8918)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시 낙찰하한률 인상 등 기준 개정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하한률 인상 등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공공조달 입찰에서 **창업초기기업에게 불리하던 사항이 대폭 개선되며** 중소기업의 **적정한 가격 보장을 위한 낙찰 하한률이 인상**되는 등 공공조달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이번 낙찰하한률 인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에 **예정가격**의 85% 이상의 입찰가격을 제시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던 것을 **88% 이상이 되어야 유효 입찰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의 적정가격을 보장하여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시에 낙찰자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 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 입찰시에 낙찰자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낙찰가격과 납품이행능력,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기술역량, 환경, 인력고용등 다양한 부분의 평가)로 구성되며 우선심사대상자가 일정 점수(현행 88점)이상 득점시에 낙찰자로 결정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성 : 전체 202개, 물품191개, 용역11개 제품

□ **이번 개정안에는** 낙찰 하한률 인상외에도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개선**과 **창업초기기업 지원**, **정부정책을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등 다양한 개정사항이 포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창업초기기업(창업 2년 이내)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 창업초기기업이 불리한 **납품실적 평가 부문에서 기본점수를 부여**(5점 만점에 3점 부여)하고

-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공장등록 기간 만점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1년 미만의 기업**에게는 부여하는 **기본점수를 상향 조정** (1.75점 → 2점)하며

-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및 매출 부족으로 신용등급 평가시 매우 불리하므로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현행 2억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기업 소상공인처럼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만점(30점)을 부여하여 불리한 부분을 보완 하였다.**

○ **정부정책을 심사 기준에 반영한 사항으로는**

- 위에서 언급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시 적용하는 낙찰하한**

률을 적정가격 보장을 위하여 상향 조정(현행 85% ⇒ 88%)하고

☞ '13.8.21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사항임

- 기술탈취, 부당하도급 거래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의 경우 원청업체와의 갈등으로 판로 축소가 우려되므로 **공공조달입찰 참여 시에 가점을 신설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고

* 공정위심결 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35조제2항의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 기업

☞ 국정과제(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및 '13.6.12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사항임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연수업체'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하여 가점을 신설하였고

- 여성고용 확대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상향 조정**

(현행) 0.5 → (개정) 1.0점

☞ 고용노동부 국정과제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확대 요청 사항 ('13. 4.)

○ 그리고 **납품실적 평가 시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에 대한 사항을 폐지** 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되는 사항의 개선을 위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 금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창업초기 기업에게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수주 기회를 높이게 되어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창업의 성공률이 제고**되고, **낙찰 하한률 인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적정가격 보장으로 조달납품 제품의 품질향상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 개정사항 요약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신상규 주무관(☎ 042-481-89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 개정사항 요약

연번	조문	구분	현재 기준	개정 (안)	개정사유
1	제4조	완화	<신설>	창업초기기업(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신용평가등급 점수를 30점으로 평가	창업초기기업도 소기업과 같이 기획재정부 장관고시 금액(현행2억3천만원) 미만의 입찰에서 신용평가 부분에 대하여30점 만점을 부여
2	제6조제2항 나호	완화	납품실적 인정기간 3년	납품실적 인정기간 5년	납품실적 인정기간이 짧아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불리하므로 인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
3	제9조 제3항	완화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에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낙찰점수 미달인 경우 외에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 개시 사유를 명시
4	제13조	기타	<신설>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고시의 폐지, 개정기간 설정
5	부칙	완화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련 현장 배치플랜트를 통해 생산하는 레미콘현장배치플랜트를 통해 생산하는레미콘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고속도로 또는철도 건설공사 관련 현장 배치플랜트를 통해 생산하는 레미콘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철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현장배치플랜트 레미콘의 심사기준 예외대상에 철도 공사를 추가

5

연번	조문	구분	현재 기준	개정 (안)	개정사유
6	별표 1-1 ※[주] ①호	완화	당해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기본점수 2점을 부여	당해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기본점수 2점(창업초기기업의 경우는 3점)을 부여	창업초기기업의 경우에는 납품실적 평가시 기본점수를 3점으로 부여(일반기업보다 1점 우대)
7	별표 1-1 ※[주] ③호	완화	물품 납품실적 제출시 인감증명서 첨부	<삭제>	납품실적 제출시에 인감증명서 첨부는 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실효성도 떨어지므로 삭제
8	별표 1-2 표	완화	생산기술 축적정도를 평가하기위한 기준인 공장등록년수 점수기준은 A. 5년이상: 3.0 B. 3년이상 5년미만: 2.5 C. 1년이상 3년미만: 2.0 D. 1년 미만: 1.75	A. 3년 이상: 3.0 B. 1년이상 3년미만:2.5 C. 1년 미만: 2.0	창업초기 기업에게 불리한 공장등록년수 만점 조건을 3년으로 축소하고 1년 미만의 기업에게 부여하는 기본점수를 1.75점에서 2점으로 상향조정하여 창업초기기업의 낙찰기회 확대
9	별표 1-2 ※[주] ②호	완화, 합리화	<신설>	기술 상위등급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이 평가 최대인원(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 하위등급 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위 등급의 기술인력을 평가최대인원보다 초과 보유시에는 하위 등급 기술인력으로 인정 (현행 기준으로는 기사 6명인 경우1.5점, 기사3명 기능사 3명인 경우에는 2.25점으로 상위등급 기술인력 다수 보유업체가 불리하여 개정)

6

연번	조문	구분	현재 기준	개정 (안)	개정사유
10	별 표 1-2 ※ [주] ③ 호	명확화	<신설>	창업초기 기업으로서 고시금액 미만 경쟁입찰 참여하는 경우에는 30점으로 평가한다.(창업초기기업 확인은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 경과 여부를 평가하며, 법인 중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본사기준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본문 제4조와 관련하여 창업초기기업신용평가 점수 산정의 신창업초기기업의 자격기준 명시
11	별 표 1-3 ※ [주]	근거법령 변경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중략... 기준으로 평가한다.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중략...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 영위자의 근거법률 변경
12	별 표 2-1	정책반영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55 - 4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 예정가격의 100분의 91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55 - 4 × |(91/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	낙찰 하한율을 예정가 대비 85%에서 88%로 상향 조정(10억원 이상)
13	별 표 2-2	정책반영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55 - 4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 예정가격의 100분의 91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55 - 4 × |(91/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	낙찰 하한율을 예정가 대비 85%에서 88%로 상향 조정(10억원 미만)

연번	조문	구분	현재 기준	개정 (안)	개정사유
14	별표3-1	정책반영	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0.5**	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1.0**	여성고용 확대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가점을 상향 조정
15	별표3-1	정책반영	<신설>	O.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연수업체'로 인증받은 기업 **1.0**	인력연수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점 신설
16	별표3-1	정책반영	<신설>	P. 하도급법 제35조제2항의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기업 · 공정위로부터 원사업자가 손해배상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심결을 받은 경우(심의의결일로부터 3년) **0.5** · 법원으로부터 원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판결일로부터 3년) **1.0**	기술탈취, 부당하도급 거래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하여 가점 신설